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참고



소비자는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12.19.(목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	책임자	국장	김회영	(02-3145-5600)
		담당자	팀장	강성곤	(02-3145-5605)

##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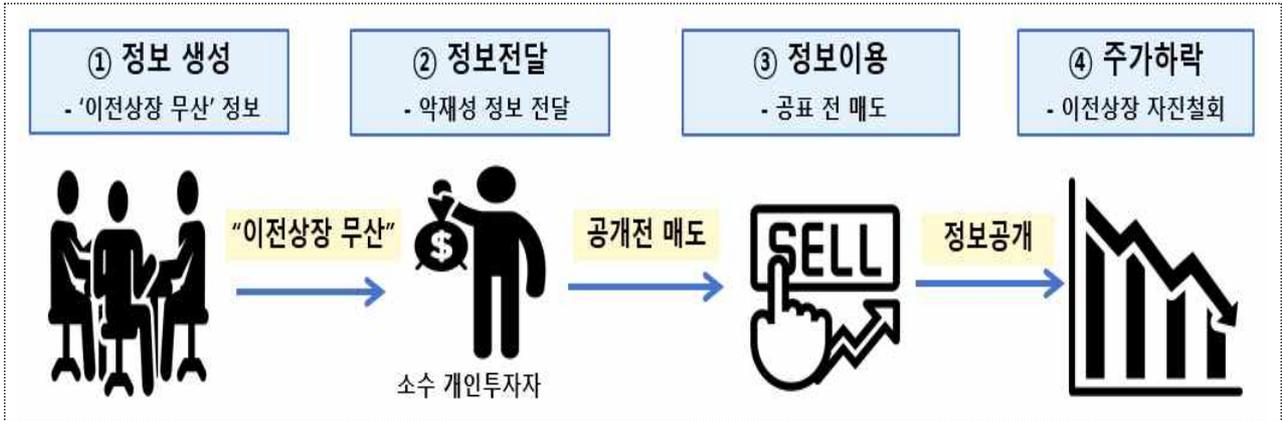
###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

- '코스닥 이전상장 무산' 악재성 정보 전달·이용하여 손실 회피 혐의 -

## 1 | 수사 결과

-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(이하 '금감원 특사경')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이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
  -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자(1명)와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자(3명) 등 총 4명을 '기소의견'으로 검찰(남부지검)에 송치('24. 12. 19.)하였습니다.
    - ※ 지난해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(Fast-track)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,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임
-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'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'되었음을 인지하자
  -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'코스닥 이전상장 무산'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하였고,
  -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습니다.
    - ☞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4조 위반

## <사건 개요>



## 2 시사점 및 투자자 유의사항

-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'주권상장법인'에 해당합니다.
  - 따라서,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직원('내부자') 및 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- 또한, 코넥스 상장법인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소속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,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합니다.
-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든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